

2025회계연도 결산 검 토 보 고 서

농 촌 진 흥 청 소 관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1.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1
2. 세입·세출 개요	3
가. 세 입	3
나. 세 출	4
3. 재무회계	5
가. 재정상태	5
나. 재정운영	6
다. 순자산변동	7
II .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8
1. 일반회계	8
가. 개 요	8
1) 세입결산	8
2) 세출결산	1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2
1) 연구개발(R&D) 사업 공통	12
(1) 사업화 성과 측정의 개선 필요	17
(2) 사업화 성과의 편중 및 조사·검증 절차 개선 필요	25
(3) 기술료 법정 사용비율 준수를 위한 보상금 지급절차 개선 필요	32
(4) 장기 미활용 특허에 대한 재평가 체계 마련 필요	35
(5) 반복적 단독응모에 대한 사전 경쟁성 검토 및 재공모 운영 강화 필요	39
(6) 평가위원 반복 참여 및 평가업무 편중 개선 필요	45
2)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부지취득 등 선행절차의 진척을 반영한 단계별 예산편성 필요	51
3) 파속채소연구소 구축: 선행절차의 완료 여부를 반영한 공사비·감리비 편성 필요	62
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의 예산 환류 강화 필요	72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4
가. 개 요	84
1) 세입결산	84
2) 세출결산	85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6
가. 개 요	86
1) 세입결산	86
2) 세출결산	86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7
가. 개 요	87
1) 세입결산	87
2) 세출결산	88

I.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총계(총수입) 기준 세입예산액은 146억 5,700만원이고, 220억 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05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4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4,657	22,005	20,514	-	1,491	5,857
기 금	-	-	-	-	-	-
총 계	14,657	22,005	20,514	-	1,491	5,857
총수입	14,657	22,005	20,514	-	1,491	5,857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세출예산(지출계획) 규모는 총계(총지출) 기준 1조 615억 2,700만원이었으나, 사업 집행 과정에서 전년도 이월 등에 따른 예산(지출) 현액은 1조 724억 7,000만원으로 증가하여 이 중 1조 311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1억 6,000만원과 불용액 391억 8,2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 전용	기타 증감				
예산	1,061,527	10,943	-	-	28,631 △28,631	9,102 △9,102	1,072,470	1,031,128	2,160	39,182
기금	-	-	-	-	-	-	-	-	-	-
총계	1,061,527	10,943	-	-	28,631 △28,631	9,102 △9,102	1,072,470	1,031,128	2,160	39,182
총지출	1,061,527	10,943	-	-	28,631 △28,631	9,102 △9,102	1,072,470	1,031,128	2,160	39,182

* 기타증감: 내역변경, 세목변경

※ 자료: 농촌진흥청 세출

2. 세입 · 세출 개요

가. 세 입

□ 농촌진흥청 소관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총계 기준 146억 5,700만원이고, 220억 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05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4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일반회계	12,023	15,007	14,005	-	1,002	1,982
농특회계 ¹⁾	1,118	235	204	-	31	△914
혁특회계 ²⁾	-	4,325	4,325	-	-	4,325
지특회계 ³⁾	1,516	2,438	1,980	-	458	464
합계	14,657	22,005	20,514	-	1,491	5,857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일반회계의 재산수입 및 경상이전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21억 3,100만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유물매각대가 당초 예산액보다 43억 2,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전체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58억 5,7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의 발생 사유는 주로 관계기관 예산 부족임.

1) 농어촌구조개선폭충회계

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나. 세 출

□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계 기준 1조 615억 2,700만원이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이월액 109억 4,3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1조 724억 7,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일반회계	940,866	10,943	-	28,631 △28,631	8,875 △8,875	951,809	911,006	2,160	38,643
농특회계	6,849	-	-	-	10 △10	6,849	6,768	-	81
혁특회계	-	-	-	-	-	-	-	-	-
지특회계	113,812	-	-	-	217 △217	113,812	113,354	-	458
총계	1,061,527	10,943	-	28,631 △28,631	9,102 △9,102	1,072,470	1,031,128	2,160	39,182
총지출	1,061,527	10,943	-	28,631 △28,631	9,102 △9,102	1,072,470	1,031,128	2,160	39,182
내부거래	-	-	-	-	-	-	-	-	-

* 기타증감: 내역변경, 세목변경

※ 자료: 농촌진흥청 세출

□ 예산현액 1조 724억 7,000만원 중 1조 311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21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91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3. 재무회계

가. 재정상태

【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금 액	비 율
자 산	3,331,751	3,275,208	56,543	1.7 %
부 채	3,015	4,242	(1,227)	(28.9 %)
순자산	3,328,736	3,270,966	57,770	1.8 %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2025년 말 현재 농촌진흥청의 자산은 3조 3,317억 5,100만원으로 전기 대비 565억 4,300만원 증가(1.7%)하였는데, 토지 취득·건물의 관리전환·구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및 감가상각 등에 따른 유·무형자산 증가(570억 600만원) 등이 주요 요인임.

□ 2025년 말 현재 부채는 30억 1,5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2억 2,700만원 감소(△28.9%)하였는데, 금융리스부채 지급 등에 따른 차입부채 감소(12억 400만원)가 주요 요인임.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25년 말 현재 3조 3,287억 3,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7억 7,000만원 증가(1.8%)하였음.

나. 재정운영

【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정운영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860,061	860,465	(404)	(0.0 %)
II. 관리운영비	157,107	153,012	4,095	2.7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14,626	15,684	(1,058)	(6.7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002,542	997,792	4,750	0.5 %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002,542	997,792	4,750	0.5 %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2025년 재정운영표 중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 총원가 8,656억 5,700만원에서 프로그램 수익 55억 9,600만원을 차감한 8,600억 6,100만원으로 전기 대비 4억 400만원 감소($\Delta 0.0\%$)하였음.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147억 500만원과 운영비 305억 7,500만원 등 총 1,571억 700만원으로 전기 대비 40억 9,500만원 증가(2.7%)하였음.
- 비배분수익은 기타국가운영수익 138억 5,300만원, 재화및용역제공수익 7억 4,900만원 등 총 146억 2,6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0억 5,800만원 감소($\Delta 6.7\%$)하였음.
- 재정운영순원가는 전기 대비 47억 5,000만원 증가(0.5%)한 1조 25억 4,200만원임.

다. 순자산변동

【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순자산변동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금 액	비 율
I.기초순자산	3,270,966	3,204,428	66,538	2.1 %
II.재정운영결과	1,002,542	997,792	4,750	0.5 %
III.재원의조달및이전	1,039,561	1,072,772	(33,211)	(3.1 %)
IV.조정항목	20,751	(8,442)	29,193	345.8 %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3,328,736	3,270,966	57,770	1.8 %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 기초순자산은 전기말 순자산 대비 665억 3,800만원 증가한 3조 2,709억 6,600만원으로 인식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는 1조 25억 4,200만원임.

□ 재원의조달및이전은 1조 395억 6,100만원으로 전기 대비 332억 1,100만원 감소하였고, 조정항목은 207억 5,100만원으로 전기 대비 291억 9,300만원 증가하였음.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이전과 조정항목을 더한 기말순자산은 3조 3,287억 3,600만원임.

II. 회계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이전 수입 73억 3,9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4억 8,600만원, 재산수입 10억 8,200만원 등 120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으로 예산 대비 증가된 150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 징수결정액 150억 700만원 중 경상이전수입 83억 2,4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4억 1,000만원, 재산수입 22억 2,800만원 등 총 140억 5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10억 2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특징은 예산액 대비 재산 수입, 경상이전수입의 수납이 증가하였다는 점임.

□ 재산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등으로 예산액 대비 수
 납액이 11억 4,600만원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국고
 보조금 잔액반납 등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9억 8,500만원
 증가하였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재산수입	1,082	2,318	2,228	-	90	1,146
토지대여료	32	22	21	-	-	△ 11
건물대여료	44	46	45	-	1	1
기타재산이자수입	558	1,606	1,517	-	89	959
기타재산이자외수입	448	644	644	-	-	196
경상이전수입	7,339	9,235	8,324	-	912	985
과태료	4	15	10	-	5	6
과징금	-	3	3	-	-	3
변상금	-	7	6	-	2	6
위약금	119	168	168	-	-	49
가산금	-	4	-	-	3	-
기타경상이전수입	7,216	9,038	8,136	-	902	92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486	3,410	3,410	-	-	△ 76
면허료및수수료	29	28	28	-	-	△ 1
실습수입	3,164	3,255	3,255	-	-	91
기타잡수입	293	128	128	-	-	△ 165
수입대체경비수입	16	20	20	-	-	4
면허료및수수료	16	20	20	-	-	4
관유물매각대	100	24	24	-	-	△ 76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00	24	24	-	-	△ 76
합 계	12,023	15,007	14,005	-	1,002	1,982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408억 6,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이 109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518억 900만원으로 증가함.

□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농업기초기반및실용화기술개발 4,207억 4,400만원, 농축산물경쟁력제고기술개발 2,311억 5,900만원, 기관운영및사업지원 1,349억 5,600만원 등 총 9,110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축산물경쟁력제고기술개발 18억 3,100만원, 농업기초기반및실용화기술개발 3억 2,900만원 등 총 21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는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등임.

□ 농축산물경쟁력제고기술개발 233억 6,500만원, 기관운영및사업지원 70억 5,900만원 등 총 386억 4,300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함.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417,515	7,037		3,693 △3,693	-	424,552	420,744	329	3,480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252,450	3,906		24,912 △24,912	-	256,356	231,159	1,831	23,365
농업신기술보급	24,315	-		-	-	24,315	23,555	-	760
지역농업특성화	62,504	-		-	-	62,504	58,844	-	3,660
농가경영능력향상	32,538	-		-	-	32,538	32,315	-	223
전문인력양성	9,529	-		5 △5	-	9,529	9,433	-	96
기관운영 및 사업 지원	142,015	-		21 △21		142,015	134,956	-	7,059
합 계	940,866	10,943		28,631 △28,631	-	951,809	911,006	2,160	38,643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연구개발(R&D) 사업 공통: 사업화 성과 측정의 개선 및 장기 미활용 특허에 대한 재평가 체계 마련 필요 등

- 농촌진흥청은 R&D 사업화 대상을 ‘성과창출형 개발과제’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과제는 72개뿐이고 나머지 89개는 성과 발생 후 편입되어 총 161개로 관리되고 있음. 이처럼 성과 발생 여부에 따라 모집단을 사후 조정하면 사업화 실적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성과경로별 관리대상을 사전에 확정하고 비대상 과제의 후속성과는 별도로 누적·관리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은 종료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별도로 조사·검증하지 않고 기술이전 정산자료와 참여기업의 자체 응답에 의존하여 사업화금액이 내수매출로만 계상되고, 기술이전이 발생한 과제의 활용성과는 사업화금액에 누락되고 있으므로, 향후 종료과제 전체를 조사하고 증빙자료로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성과유형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의 기술료 법정 사용비율 미준수 계약은 2021년 2건에서 2024년 18건, 2025년 14건으로 5년 연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법정 비율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니라 기여자 선정 심의·기여도 평가 등 내부 절차의 지연에 있으므로, 기술료 수납 시점에 계약별 최소 사용액을 산출하고 보상대상 선정과 지급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사전점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의 유효 보유특허는 2021년 4,321건에서 2025년 4,916건으로 증가하였으나 활용률은 45.0%에서 46.8%로 정체된 반면, 등록 후 5년 이상 장기 미활용 특허는 1,322건에서 1,717건으로 395건(29.9%) 증가하였으므로, 장기 미활용 특허 전체를 정기 재평가 대상으로 두고 계속보유·활용촉진·권리정리 등으로 관리방향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 소관 R&D의 신규과제 단독응모율은 2023년 22.7%에서 2024년 57.1%, 2025년 54.9%로 다시 상승하였고, 2025년 단독응모율 50% 이상 세부사업도 4개에 이르므로, 농촌진흥청은 잠재 수행기관과 경쟁 제한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단독응모 발생 시 재공고 등 경쟁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의 2025년 연구개발과제 평가에서 전체 평가위원의 28.1%인 103명이 전체 평가건수의 50.1%를 담당하고, 특정 위원은 연간 44건을 평가하는 등 평가업무가 일부 위원에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별 최근 평가이력과 누적 평가건수를 관리하고, 반복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와 대체후보 검토결과를 확인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촌진흥청의 2025년 R&D 예산은 총 42개 세부사업으로, 스마트 농업·농작업 자동화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 생명공학 원천기술 확보 및 고부가 농식품산업 활성화 등 그린바이오 융합,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 먹거리 공급기반 강화, 지역농업·농촌자원 소득자원화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총 5,672억 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39억 6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5,711억 5,100만원 중 5,459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3,100만원을 이월, 233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농촌진흥청은 타분야 기술 접목에 따른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실용화 촉진 등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관·연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연구사업과 법정 고유사무 수행을 위한 기관고유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연구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진청 훈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연구개발(R&D)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촌진흥청 소관 R&D 사업	567,245	3,906	-	-	571,151	545,957	1,831	23,362	621,126
- 농업과학기술기반기술 연구(R&D)	82,276	-	△3,693	-	78,583	77,762	-	821	76,051
-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R&D)	5,350	-	-	-	5,350	5,350	-	-	-
- 작물시험연구(R&D)	61,465	-	3,693	-	65,158	63,410	-	1,748	70,634
- 신제품 지역적응 연구(R&D)	20,529	-	-	-	20,529	20,528	-	1	25,349
- 신농업기후변화대응 체계구축(R&D)	23,880	-	-	-	23,880	23,880	-	-	23,257
- 저탄소그린라이프 생산기술개발(R&D)	1,732	-	-	-	1,732	1,732	-	-	1,559
- 탄소저감환경보전형 유기농업과유기자원재 순환기술개발(R&D)	1,940	-	-	-	1,940	1,940	-	-	1,746
- 농자재관리 및 평가(R&D)	12,794	-	-	-	12,794	12,790	-	-	9,736
- 공공성확보를위한 국가기반육종플랫폼개 발(R&D)	6,976	-	-	-	6,976	6,906	-	70	7,008
- 시험연구활동지원 (R&D)	6,996	-	-	-	6,996	6,972	-	24	7,071
- 국제농업기술협력 (R&D)	5,242	-	-	-	5,242	5,236	-	6	6,571
-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R&D, ODA)	43,843	-	-	-	43,843	43,683	-	160	34,471
- 지역특화작목기술혁신 기반조성사업(R&D)	776	-	-	-	776	776	-	-	884
- 2025축산현안대응 기술고도화(R&D)	2,549	-	-	-	2,549	2,549	-	-	-
- 국가농경지환경자원 관리기술개발(R&D)	5,669	-	-	-	5,669	5,669	-	-	-
-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농진청) (R&D)	3,240	-	-	-	3,240	3,234	-	6	2,700
- 미세먼지저감을위한 농업분야대응강화 기술개발(R&D)	3,500	-	-	-	3,500	3,500	-	-	3,500
- 현장맞춤형발농업 기계고도화(R&D)	4,440	-	-	-	4,440	4,440	-	-	12,403
- 수출전략형신작물 보호제기반기술개발 (R&D)	5,332	-	-	-	5,332	5,332	-	-	4,799
- 차세대농작물신육종 기술개발(R&D)	7,005	-	-	-	7,005	6,980	-	25	7,049

- K-농식품자원기능성 성분활용기반고도화 (R&D)	6,431	-	-	-	6,431	6,431	-	-	6,054
- 원예특용자원생산과 품질표준화연구(R&D)	3,050	-	-	-	3,050	3,050	-	-	3,050
- 반려동물전주기고도화 기술개발(R&D)	4,010	-	-	-	4,010	4,010	-	-	3,409
- 차세대중형위성개발 (농림위성)(R&D) (농진청)	2,800	-	-	-	2,800	2,800	-	-	-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18,180	-	-	-	18,180	18,180	-	-	18,708
- 민간연구개발지원 (R&D)	25	-	-	-	25	20	-	5	25
- 원예특작시험연구 (R&D, 책임운영)	74,889	-	-	-	74,889	73,239	-	1,650	77,355
- 북부원예출장소구축 (R&D, 책임운영)	2,527	-	-	-	2,527	2,491	-	36	-
- 과속채소연구소구축 (R&D)	12,310	906	-	-	13,216	7,132	-	6,084	2,498
- 축산시험연구(R&D, 책임운영)	53,513	-	-	-	53,513	52,036	-	1,477	53,755
- 축산자원개발부이전 사업(R&D)	40,254	3,000	-	-	43,254	30,207	1,831	11,216	53,138
-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생산 성향상모델개발 (R&D)	1,424	-	-	-	1,424	1,394	-	30	1,359
- 농업실용화기술R&D 지원(R&D)	600	-	-	-	600	600	-	-	-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R&D, 보조, 지역지원)	7,764	-	-	-	7,764	7,764	-	-	-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R&D, 보조, 제주)	484	-	-	-	484	484	-	-	-
- 중점관리병해충선제 대응및피해경감기술실 용화(R&D)	7,900	-	-	-	7,900	7,900	-	-	10,533
- 밀자급률도약생산 소비연계핵심기술 개발(R&D)	4,400	-	-	-	4,400	4,400	-	-	5,867
- 원예작물수급안정을 위한이상기상대응 기술고도화(R&D)	6,000	-	-	-	6,000	6,000	-	-	8,000
- 농업기초기반전문 기술인재양성(R&D)	2,400	-	-	-	2,400	2,400	-	-	3,200
- 노지스마트농업활용 모델개발(R&D)	3,750	-	-	-	3,750	3,750	-	-	5,000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구축 (R&D)	4,000	-	-	-	4,000	4,000	-	-	5,333
- 농산부산물Eco순환 기술개발(R&D)	5,000	-	-	-	5,000	5,000	-	-	6,667

□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중 2020~2024년에 종료된 과제는 901개이고, 이들 과제에 투입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4,124억 6,516만원임.

농촌진흥청은 이 가운데 740개를 사업화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161개를 사업화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금액형 사업화성자가 확인된 과제는 19개, 사업화금액은 277억 6,110만원임.

같은 종료과제에서 특허 127건이 등록되고 기술이전 계약 837건이 체결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2020~2024년 종료과제 주요 성과(~'25.12.31.⁴⁾) 현황 】

(단위: 백만원)

종료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사업화대상	금액성과발생	사업화금액	특허등록	기술이전계약
901개	412,465	161개	19개	27,761	127건	837건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4) 사업화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 기술이전·제품화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0~2024년 종료과제를 분석대상으로 하되 사업화 성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누적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함.

나) 검토의견

(1) 사업화 성과 측정의 개선 필요

□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은 소속 연구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자체연구개발과제)와 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됨.

이 중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17조의 연구개발성과 활용조치 의무나 추적조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성과관리 의무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동 법 제5조제7호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사업화 촉진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5호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19조는 위 적용 제외와 무관하게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과 자체평가, 사업 종료 후 성과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화 성과를 실태에 맞게 집계·관리하여야 함.

□ 한편, 공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5)의 성과활용 조치의무가 적용되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 제4항6)도 과제 종료 다음 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속 활용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등)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른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 특별평가에 따라 중단된 과제 및 제38조의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휴·폐업 등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다만, 농촌진흥청 소관 R&D는 법정업무와 정책지원 성격의 연
구를 각각 포함하고 있어 모든 과제를 사업화금액이라는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과제의 유형에 따라, 품종보급·정책 반영·현장적용 등
과제의 목적에 맞는 성과경로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하므로, 농촌진흥청이 소관 R&D를 사업화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음.

다만, 문제는 사업화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구분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사업화 대상과제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사업화 대상은 ‘과제 유형이 성과창출형이면서 연구개발단계
가 개발⁷⁾인 과제’로 정의되어 있음.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는 과제
는 72개에 불과한 반면,

7)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구개발사업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
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다.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
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농촌진흥청이 실제 사업화 대상으로 분류한 과제는 161개로,
기준상 대상 과제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2024년 종료과제(901개)의 사업화 대상 여부 】

○ 사업화 대상 과제: 「과제 유형이 성과창출형이면서 연구개발단계가 개발단계인 과제」
(단위: 개)

구 분	대 상	비대 상	계	비 고
성과창출형·개발단계	72	0	72	당초 사업화 대상 과제
성과창출형·기초/응용/기타	49	568	617	사업화 발생한 과제 사업화 대상 편입
그 밖의 유형(법정임무형 등)	40	172	212	
계	161	740	901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과제별 원자료의 사업화 상태 및 분류기준 기재사항을 토대로 재구성

나머지 89개는 당초 기준상 사업화 비대상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① 성과창출형이면서 연구개발단계가 기초·응용·기타인 과제 49개와 ② 법정임무형 등 그 밖의 유형에 속하는 과제 40개임.

특히, 후자 40개는 과제 유형 자체가 성과창출형이 아니어서
농촌진흥청이 스스로 설정한 사업화 대상의 정의에 처음부터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제임.

농촌진흥청은 이들 과제에 대하여 ‘비대상 과제이나 특허·
품종 개발에 따라 사업화·기술이전 등이 발생한 과제는 사
업화 준비·완료로 분류함’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사
후에 대상으로 편입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는 사업화 대상 여부를 사전 기준이 아니라 성과 발생이라는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성과지표의 모집단을 성과에 의해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성과를 측정하려면 모집단인 대상 과제군이 성과와 무관하게 먼저 확정되어 있어야 하나, 현행 농촌진흥청의 사업화 대상 운용은 성과가 확인된 과제를 대상에 포함하고 확인되지 않은 과제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모집단이 결과에 의해 사후 조정되는 구조이므로,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수치가 모두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함.

첫째, 2020~2024년 종료과제 중 사업화 대상 161개는 전부 사업화 준비 또는 완료로 분류되어 사업화율이 100%로 나타남.⁸⁾

이는 사업화가 실제로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화가 확인된 과제만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임.

둘째, 비대상 740개 과제의 기술이전 실적은 0건으로 집계

8) 사업화율 100%는 「사업화 준비·완료」라는 상태 분류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사업화금액이 발생한 과제는 19개(11.8%)에 불과함.

되어 있으나, 이 역시 비대상 과제에서 기술이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이전이 발생한 과제는 모두 대상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즉, 양쪽 수치 모두 사업화 성과의 실태가 아니라 분류의 결과를 나타낼 뿐이므로, 연도 간 비교나 사업 간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고, 성과지표로서의 신뢰성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이러한 평가 대상의 사후 편입은 성과가 개별적으로 인지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졌음.

농촌진흥청은 비대상 740개 과제 전체에 대하여 활용성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전수 조사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입장임. 결국 성과가 우연히 인지된 과제만 대상이 되고, 조사하지 않은 과제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 구조임.

아울러, 기초·응용·기타 단계 과제 49개에서도 사업화 성과가 확인되어 대상으로 편입된 이상, 연구개발단계가 성과 발생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스스로 확인한 것임에도, 나머지 비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개발단계를 이유로 성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더욱이, 농촌진흥청은 ‘특허가 출원·등록되었으나 기술이전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화 비대상으로 분류함’이라는 기준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비대상 740개 과제에서 특허 출원 186건, 등록 47건(29개 과제)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술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업화 비대상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특허가 등록되고도 활용되지 않는 상태야말로 활용 촉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현행 기준은 이미 활용된 과제만을 관리대상으로 삼고 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업화 대상 여부를 성과 발생 여부에 따라 사후에 결정하는 현행 운용방식을 개선하여, 과제 기획 또는 협약 단계에서 성과경로별 관리대상을 사전에 확정하고, 성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모집단을 유지함으로써 사업화 성과가 실태에 맞게 측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종료과제를 ‘사업화 대상－비대상’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대신 공익·정책활용형, 품종·영농기술 보급형, 기술이전·사업화형 등 성과경로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핵심성과와 증빙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업화 대상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도 품종보급, 정책·제도 반영, 기술의 현장 적용, 특허 등록 후 활용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등 후속성과를 일정 기간 누적·관리하는 한편, 특허가 등록되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과제는 활용 촉진 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이미 사업화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활용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소급 점검계획을 마련하되, 성과창출형이면서 사업화 비대상인 568개 과제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하고,

그중 종료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2020~2022년 종료과제부터 착수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과제 기획·조정 및 예산배분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2) 사업화 성과의 편중 및 조사·검증 절차 개선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화 대상 과제군은 성과가 확인된 과제를 사후 편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과제군에서 측정된 성과 또한 조사·검증 절차와 성과 유형의 측면에서 실제 활용수준을 나타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첫째, 사업화 성과가 소수 과제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화 금액 총액이 농촌진흥청 R&D의 성과 수준을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2020~2024년 종료 사업화 대상과제의 사업화금액 분포 】

(금액 단위: 백만원)

구간	과제수	비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사업화금액	사업화금액 비중(%)
100억원 이상	1	0.6	250	0.2	11,516	41.5
10~100억원 미만	4	2.5	2,271	1.7	13,522	48.7
10억원 미만(0원 제외)	14	8.7	12,237	9.2	2,723	9.8
사업화 준비 중	142	88.2	118,632	88.9	0	0
포기	0	0	0	0	0	0
미응답	0	0	0	0	0	0
합 계	161	100	133,390	100	27,761	100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농촌진흥청이 사업화 대상으로 분류한 2020~2024년 종료과제 161개(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33억 9,034만원) 중 2025년 말까지 1원 이상의 사업화성과가 발생한 과제는 19개(11.8%)

이고, 나머지 142개(88.2%)는 사업화 준비 중으로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음.

또한, 100억원 이상의 사업화금액이 발생한 과제 1개와 10억~100억원 미만 과제 4개 등 5개 과제가 전체 사업화금액의 90.2%를 차지하고, 그 중 1개 과제가 41.5%(115억 1,630만원)를 차지하였는데, 해당 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억 5,000만원임.

즉, 사업화금액의 90.2%를 창출한 상위 5개 과제에 투입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억 2,100만원으로 대상과제 전체 투입액의 1.9%에 불과한 반면,

전체 투입액의 88.9%에 해당하는 1,186억 3,240만원이 투입된 142개 과제에서는 사업화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이와 같이 사업화금액 총액은 소수 과제의 성과에 좌우되어 재정 투입 규모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총액만으로는 농촌진흥청 소관 R&D의 전반적인 사업화 성과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사업화금액을 총액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상위 과제를 제외한 분포와 과제당 중앙값 등을

함께 관리하고,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142개 과제의 미발생 원인을 조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업화 성과가 별도의 조사 없이 제한된 경로로만 파악되고 있어 성과유형이 내수매출에 편중되고 실제 발생한 활용성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종료과제의 사업화 성과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화금액은 ① 기술이전 계약 종료 시점의 정산 절차와 ② 공동연구 참여기업의 자체조사 결과 제출이라는 두 경로로만 파악되고 있음.

그 결과, 사업화금액의 성과유형도 단일하게 나타남. 2020~2024년 종료과제의 사업화금액 277억 6,110만원은 전액 내수매출로 산출되었고, 수출매출·기술이전 수입·비용절감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위 두 경로는 모두 국내 실시에 따른 매출액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그 밖의 성과유형은 애초에 파악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그러나, 농촌진흥청 R&D의 성과는 품종보급, 기술이전, 영농기술의 현장적용 등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며, 실제로

사업화 대상 161개 과제 중 기술이전이 발생한 과제는 100개(62.1%)이고, 기술료 회수액이 발생한 과제도 62개로, 이 중 52개는 사업화금액이 계상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기술이전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화금액이 0원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89개로, 이들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이전 계약금액 6억 4,100만원과 기술료 회수액 5억 1,400만원은 사업화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음.

【 사업화 대상과제(161개)의 기술이전 발생 및 사업화금액 계상 현황 】

(단위: 개, %, 백만원)

구 분	과제수	비중	기술이전 계약금액	기술료 회수액	사업화금액
기술이전 발생 과제	100	62.1%	855	602	4,900
↳ 사업화금액 계상	11	6.8%	214	88	4,900
↳ 사업화금액 미계상	89	55.3%	641	514	0
기술이전 미발생 과제	61	37.9%	-	129)	22,861
↳ 사업화금액 계상	8	5.0%	-	12	22,861
↳ 사업화금액 미계상	53	32.9%	-	-	0
합 계	161	100.0%	855	614	27,761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과제별 원자료를 토대로 재집계, 2020~2024년 종료과제 기준.

※ 기술료 회수액이 발생한 과제는 62개이며, 이 중 52개는 사업화금액이 계상되지 않았음.

또한, 사업화금액의 계상 및 검증 방식도 성과 발생 경로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9) 기술이전 미발생 과제의 기술료 회수액 12백만원은 농촌진흥청 제출자료상 기술이전 건수가 0으로 기재된 2개 과제(「무·배추 생산 전과정기계화 기술 개발」 8.5백만원, 「양파, 마늘 전과정기계화 기술 개발」 3.4백만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술이전 실적과 기술료 회수 실적 간 기재가 상호 정합하지 아니하므로, 과제별 성과 기재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사업화금액의 82.3%인 228억 6,100만원은 정산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8개 과제에서 참여기업의 자체조사에 따라 산출된 반면, 정산 절차의 대상인 기술이전 발생 과제 100개에서 산출된 금액은 49억원에 그치고 있음.

즉, 사업화금액의 대부분은 별도의 검증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참여기업의 자체응답을 토대로 산출되는 반면,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료 회수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활용성과는 사업화금액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기업의 자체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임의 제출자료이므로 조사대상·시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증빙에 의한 확인이나 실적치·추정치 구분도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자체조사에 응한 기업의 과제만 성과가 확인되므로, 사업화 준비 중 142개 과제가 실제로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단순히 조사·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움.

결국, 사업화 성과의 확인이 기술이전 계약 종료 시점의 정산과 참여기업의 임의적인 자체응답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성과는 집계에서 누

락되고 사업화 대상과제의 범위와 사업화금액도 조사·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더욱이, 사업화 대상과제의 편입기준은 ‘특허·품종 개발에 따라 사업화·기술이전 등이 발생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으나, 사업화 성과는 내수매출만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술이전 발생을 이유로 사업화 대상과제에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기술이전 성과는 사업화 성과로 포착되지 않는 등 사업화 대상과제의 편입기준과 성과 측정기준이 서로 정합하지 않는 문제도 있음.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소관 R&D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술료 정산 절차 및 참여기업의 자체조사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에서 나아가, 종료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시기·방법이 정해진 활용성과 조사체계를 마련하고, 조사 대상 과제수·응답률·미응답 사유를 연도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화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에 의한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실적치와 추정치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추정치의 경우 산정방식과 근거를 함께 기록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업화 성과금액을 내수매출 단일 유형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기술이전 수입 및 기술료 회수액, 수출, 비용절감, 후속투자 등 실제 발생한 성과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특히, 기술이전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화금액이 0원으로 집계된 89개 과제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성과금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넷째, 사업화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142개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 미발생’과 ‘미조사’를 구분하여 확인하고, 종료연도별 경과연차에 따른 누적 사업화금액을 관리하여 관측기간의 차이를 보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기술료 법정 사용비율 준수를 위한 보상금 지급절차 개선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정부지분기술료의 60% 이상을 참여연구자 보상금에, 15% 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비용에, 10% 이상을 성과활용 기여 직원 보상금에 사용하여야 함.

□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개별 기술실시계약 단위로 재점검한 자료를 보면 법정 사용비율 미준수 계약은 2021년 2건(2.2%), 2022년 5건(5.2%), 2023년 7건(8.1%), 2024년 18건(19.6%), 2025년 14건(14.7%)으로 5년 연속 확인되고 있음.

이들 계약의 미달액은 5년 합계 3,146만원으로 계약당 2만원~347만원 수준이며, 미준수 항목을 기준으로 하면 47건이고 그중 42건이 성과활용 기여 직원 보상금 항목에 집중되어 있음.

【 2021~2025년 기술료 법정 사용비율 미준수 및 미달액 현황¹⁰⁾ 】

사용연도	적용대상 계약	미준수 계약	미준수 비중	미달액(천원)	주요 미준수 항목
2021	90	2	2.2%	2,150	기여자 보상
2022	96	5	5.2%	8,200	기여자 보상
2023	86	7	8.1%	4,470	연구자·기여자 보상
2024	92	18	19.6%	14,130	연구자·기여자 보상
2025	95	14	14.7%	2,510	연구자·기여자 보상
합 계	459	46	10%	31,460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 개별 명세를 보면 미준수의 원인은 법정 비율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료 수납 이후 보상 대상자 선정·심의·지급까지의 내부 절차가 적기에 완료되지 않은 데 있음. 미준수 항목 47건 중 33건이 기여자 선정 심의 지연, 9건은 기여도 평가 지연을 사유로 하고 있음.

□ 나머지 5개 항목은 도 농업기술원 등이 성과소유기관인 경우 기술료를 세입조치한 후 조례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한 사례로, 이는 개별 기관의 착오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처리 절차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보상금 사용기준이 상충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로 볼 수 있음.

10) 2024년 12월 3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참여연구자 보상금의 법정 사용비율이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정 시행 전에 체결된 기술실시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50% 기준이 적용됨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기술료 수납 시점에 계약별 정부지분기술료와 적용 법정비율을 확인하여 최소 사용액을 산출하고, 보상대상 선정과 지급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사전점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준수가 확인된 계약은 시정 여부와 완료기한을 별도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성과소유기관인 경우 세입 처리 절차와 기술료 사용기준이 상충하지 않도록 지침 등의 정비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4) 장기 미활용 특허에 대한 재평가 체계 마련 필요

- 특허의 출원·등록은 중요한 연구성과이나, 등록 자체가 최종적인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움.

연구개발의 목적은 성과의 창출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성과가 산업 현장과 농업인에게 실제로 이전·활용되는 데 있으며, 등록 건수만을 성과로 관리할 경우 출원·등록 단계에만 관리 유인이 집중되어 활용 단계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일정 기간 미활용된 성과에 대하여 활용 가능성과 보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의 유효 보유특허는 2021년 4,321건에서 2025년 4,916건으로 595건(13.8%) 증가하였으나, 활용률은 45.0%에서 46.8%로 1.8%p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등록 후 5년 이상 장기 미활용 특허는 1,322건에서 1,717건으로 395건(29.9%) 증가하였고, 그 비중도 30.6%에서 34.9%로 높아졌음.

【 농촌진흥청 유효특허 및 장기 미활용 특허 현황 】

기준연도	유효특허	활용특허	활용률	등록 후 5년 이상 미활용	5년 이상 미활용률
2021	4,321	1,943	45.0%	1,322	30.6%
2022	4,468	2,030	45.4%	1,434	32.1%
2023	4,584	2,127	46.4%	1,565	34.1%
2024	4,776	2,226	46.6%	1,702	35.6%
2025	4,916	2,299	46.8%	1,717	34.9%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활용특허는 국내·해외,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고유특허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임.)

□ 다만, 이와 같은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의 장기 미활용 특허 중에는 공익적·정책적 목적상 장기간 보유할 필요가 있는 특허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장기 미활용 특허의 수와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허 관리가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은 2025년 12월 장기 미활용 특허 745건에 대하여 기술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상위 200건을 선별한 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50건을 집중 마케팅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바, 이는 미활용 특허에 대한 활용 촉진 조치로서 긍정적인.

다만, 2025년 말 기준 장기 미활용 특허는 1,717건으로 기술등급평가 대상 745건을 크게 상회함에도, 농촌진흥청이 미활용 특허 전체에 대하여 실시이력·잔여 권리기간·기술 노후화 및 정책적 보유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권리 유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한 실적은 확인되지 않음.

또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1~2025년 권리포기, 무효·취소, 양도·이관 및 존속기간 만료 실적도 모두 0건이고, 특허 유지비용 관련 자료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허의 계속 보유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 규모조차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미활용 특허 중 우수특허에 대한 집중 마케팅과는 별도로, 장기 미활용 특허 전체에 대해서는 계속 보유의 정책적·기술적 필요성과 유지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 유지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등록 후 5년 이상 미활용 특허 전체를 정기적인 재평가 대상으로 두고 ① 공공·정책목적 계속 보유, ② 집중 활용촉진, ③ 개방·양도 검토 및 ④ 권리 유지 필요성 재검토 대상 등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평가는 기술성·시장성·대체기술 출현 여부·잔여
권리기간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국내·해외 특허별 유지
비용을 함께 산출하여 보유의 실익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특허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지식재산처와 연계할 필
요가 있음.

(5) 반복적 단독응모에 대한 사전 경쟁성 검토 및 재공모
운영 강화 필요

-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음.

따라서, 과제의 특성상 수행가능 기관이 실제로 제한되는 경우와 복수기관의 경쟁이 가능한 경우를 사전에 구분하여 그에 맞는 선정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¹¹⁾

- 농촌진흥청의 신규 과제 단독응모율은 2021년 67.4%, 2022년 53.0%에서 IRIS¹²⁾가 도입된 2023년 22.7%로 크게 낮아졌으나, 2024년 57.1%, 2025년 54.9%로 다시 상승하였고, 최근 5년 중 4개 연도에서 신규 과제의 절반 이상이 1개 기관만 응모한 상태에서 선정되었음.

2023년에 22.7%까지 낮아졌던 단독응모율이 이듬해 57.1%로 다시 상승한 것을 볼 때, 공고 플랫폼의 변경만으로는 경쟁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도록 하되, 같은 항 제5호는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기관이 극히 제한되어 공모가 사실상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10조제2항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기관·연구자의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2021~2025년 신규 R&D 과제 공모 경쟁성 현황 】

연도	신규 공모· 선정 과제	단독응모 과제	단독응모율	응모건수	과제당 경쟁률
2021	261	176	67.4%	405	1.6
2022	215	114	53.0%	395	1.8
2023	132	30	22.7%	300	2.3
2024	126	72	57.1%	234	1.9
2025	173	95	54.9%	370	2.1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 2025년 단독응모율이 50% 이상인 세부사업은 신제품·지역적
응연구 91.9%, 농자재관리및평가 83.3%, 노지스마트농업활용
모델개발 66.7%,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피해경감기술실용
화 50%로 4개이고, 모두 지정공모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들 사업의 단독응모 과제에 배분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제의 총 연구기간 총액 기준 1,782억 7,500만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농약 등록·평가 등 법정업무, 신제품
종 지역적응시험, 중점관리 병해충 및 선행연구의 연속성 등
으로 인해 관련 전문성과 시설을 갖춘 수행기관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IRIS를 통한 공고 확대와 공동연구·시설 공동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2025년 단독응모율 50% 이상 세부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신규 공모 선정 과제	단독응모 과제	단독 응모율	단독응모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품중지역적응연구	37	34	91.9%	92,905
농자재관리및평가	24	20	83.3%	16,988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피해 경감기술실용화	22	11	50.0%	49,632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	3	2	66.7%	18,750
합 계	86	67	77.9%	178,275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물론, 법정임무의 성격을 갖는 분야에서 수행 가능한 기관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설명이 4개 사업 86개 과제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2025년도 신규과제 중 재공모 과제 응모 현황을 보면, 농촌진흥청의 설명과 배치되는 결과가 확인됨.

2025년도 신규과제 중 재공모를 실시한 10개 과제 가운데 5개 과제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응모기관 수가 증가하였음.

【 2025년 재공모 과제 중 응모기관이 증가한 과제¹³⁾ 】

연구개발과제명	1차 응모건수	재공모 응모건수	증감
유전체 대사체 통합 공 딥데이터 구축	1	3	+2
닭 딥데이터 활용 시스템 및 유전능력평가 자동화 체계 구축	1	4	+3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공공 서비스 개발	2	6	+4
노지 과수 스마트영농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2	5	+3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분양자원 뱅크 구축	3	4	+1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이는 단독응모가 반드시 수행 가능 기관이 구조적으로 1개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공고 조건과 과제 기획방식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더욱이, 재공모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기관의 재량이므로, 재공모 결과 경쟁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해당 과제들이 애초에 경쟁이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었음을 의미함.

그럼에도 2025년 단독응모 95개 과제 중 재공모가 실시된 과제는 10개에 그치고 있어, 단독응모가 발생한 경우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13) 2025년 재공모 과제는 총 10개이며, 이 중 5개 과제에서 응모기관 수가 증가하였고 4개 과제는 변동이 없었으며 1개 과제(「종자 세대전이 마이크로바이옴 건전성 증대 기술 개발」)는 2건에서 1건으로 감소하였음.

□ 아울러, 2025년 신규·계속 과제 548개 중 농촌진흥청 부설·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과제가 296개(54.0%)이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으로 55.1%를 차지하고 있어 소관 R&D의 상당부분을 자체 수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2025년 신규과제 173개 중 기타 주체(협회·재단 등)가 주관한 39개 과제 중 34개(87.2%)가 단일 응모기관이 선정되어 단독응모 비율이 가장 높았음.

이와 같이 특정 유형의 기관에 과제가 집중되는 구조 역시 경쟁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R&D 신규과제의 단독응모율은 2021년 17.9%에서 2025년 6.7%로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단독응모 과제 비율이 50% 이상인 세부사업도 2021~2025년 동안 없었음.¹⁴⁾

두 기관은 세부 연구분야와 잠재 수행기관의 범위가 서로 달라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같은 농식품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공모·과제설계 방식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4)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출

□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촌진흥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첫째, 신규과제 기획 시 잠재 수행기관 수와 필수시설·전문인력, 자격요건의 경쟁제한성 등을 사전에 조사·검토하고, 일반 경쟁형·시설제약형·사실상 유일기관형으로 과제를 구분하여 공모·선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경쟁이 가능한 과제에서 단독응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과업범위 조정, 컨소시엄·시설 공동활용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수행 가능한 기관이 극히 제한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모 외 선정방식의 적용 여부와 그 사유, 해당 기관의 역량 및 과거성과 검증 결과를 선정기록에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음.

넷째, 단독응모율뿐 아니라 재공모 실시율과 재공모 후 경쟁전환율, 신규기관 참여율을 연도별로 관리하여 공고방식 개선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6) 평가위원 반복 참여 및 평가업무 편중 개선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시 평가단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제2항과 제38조제2항도 선정평가와 단계·최종평가를 실시할 때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가위원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지원과제의 선정, 계속 지원 및 성과판단에 직접 관여하므로, 이해충돌 여부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의 전문분야, 최근 평가이력, 평가부담과 실제 배정의 분산 정도까지 관리하여야 위 규정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농촌진흥청은 IRIS에 등록된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과제참여 연구자를 제외하고 기술분야에 따라 평가위원을 자동추출하고 있다는 입장임.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5년 등록·위촉가능 인원은 5,949명이고, 학계 2,891명, 기관 1,451명, 산업계 1,358명 등으로 후보단 자체의 규모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후보단을 통합시스템에서 관리하고 과제참여자를 사전에 제외하며 기술분야별로 자동추출하는 것은 담당자의 자의적 선정을 줄이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 2025년 IRIS 등록 평가위원 후보단 현황 】

(단위: 명)

구분	기관	학계	산업계	미분류	합계	신규위원 비율
등록·위촉가능	1,451(24.4%)	2,891(48.6%)	1,358(22.8%)	249(4.2%)	5,949	11.58%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농업 R&D는 전문분야가 세분되어 있고 실제 참여위원도 농산 102명, 식품 66명, 환경생태 54명, 축산 51명, 융복합 50명인 반면,

산림자원은 5명, 농림식품 경제·사회는 2명으로 분야별 차이가 있어, 모든 분야에 동일한 반복참여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이는 일부 분야에서 반복참여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일 뿐, 실제 평가업무가 특정 위원에게 어느 정도 집중되고 있는지를 파악·관리할 필요성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님.

농촌진흥청이 별도 제출한 2025년 평가위원 참석현황을 평가위원별 실제 평가과제 수 기준으로 재집계한 결과, 선정·단계·최종평가에 참여한 366명이 총 3,194건의 과제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과제별 평가현황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선정평가는 220명이 2,024건을 평가하여 참여위원 1인당 평균 9.2건, 최다 39건이고, 단계평가는 51명이 371건을 평가하여 평균 7.3건, 최다 9건이며, 최종평가는 131명이 799건을 평가하여 평균 6.1건, 최다 16건임.

【 2025년 평가단계별 평가위원 및 과제평가 현황 】

(단위: 명, 건, 개)

평가단계	참여위원	과제평가 건수	1인당 평균	최다 평가	분과 수
선정평가	220	2,024	9.2	39	36
단계평가	51	371	7.3	9	6
최종평가	131	799	6.1	16	24
합계	366	3,194	8.7	44	66

※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단계별 참여위원 수는 해당 단계에서 1건 이상 평가한 인원이며, 여러 단계에 참여한 위원이 있어 단계별 인원의 합계와 전체 평가위원 수는 일치하지 않음.

□ 특히, 전체 366명 중 28.1%인 103명이 10건 이상을 평가하여 전체 3,194건의 50.1%인 1,601건을 담당하였고, 20건 이상 평가자 22명이 18.3%를 담당하였음.

【 2025년 평가위원별 과제평가 건수 분포 】

(단위: 명, 건, %)

평가건수 구간	평가위원	위원 비중	과제평가 건수	평가건수 비중
1~4건	53	14.5	160	5.0
5~9건	210	57.4	1,433	44.9
10~14건	66	18.0	776	24.3
15~19건	15	4.1	241	7.5
20~29건	17	4.6	397	12.4
30건 이상	5	1.4	187	5.9
합계	366	100.0	3,194	100.0

※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평가위원별 선정·단계·최종평가 과제수를 합산하여 구간별로 재집계함.

농업 R&D의 전문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고 적격 전문가가 제한된 분야에서는 동일 전문가의 반복참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현행 법령과 농촌진흥청 운영규정도 평가위원의 연간 평가과제 수에 일률적인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전체 평가위원의 28.1%인 103명이 전체 평가건수의 50.1%를 담당하고, 20건 이상 평가한 22명이 18.3%를 담당하며, 특정 위원은 연간 44건¹⁵⁾을 평가하는 등 실제 평가업무가 일부 위원에게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음.

15) 2025년 최다 평가위원 1명이 선정평가 39건, 최종평가 5건 등 총 44건을 평가하였음.

□ 이와 같이 소수 평가위원에게 평가업무와 판단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은 다양한 전문가의 관점이 평가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을 제약하고, 특정 위원의 판단이 다수 과제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도 측면에서 우려의 여지가 있음.

만약 동일 전문가의 반복참여가 전문성 확보나 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그 필요성이 실제 배정 과정에서 확인·관리되어야 함.

즉, 반복 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격 후보군 규모, 대체후보 검토 여부와 전문성·평가연속성 등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체 평가단계를 합산한 최다 평가자는 44건을 담당하였는데, 연구개발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과제별 기술내용과 성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정 기간이나 동일 평가일에 다수의 과제가 한 위원에게 집중될 경우 과제당 검토시간이 줄어들고 평가의견이 정형화되는 등 평가의 충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평가위원의 반복참여 및 평가업무 편중을 완화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평가위원별 실제 과제평가 건수를 기본 관리지표로 삼고, 평가일·평가단계·과제번호를 연계하여 최근 평가이력과 평가일별 과제수를 평가위원 선정 전에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분야별 평가대상 과제수와 적격 후보 수 등을 고려하여 반복참여 및 평가업무 집중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동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와 대체후보 검토결과를 기록·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10건·20건 이상 평가자의 인원 및 평가건수 비중, 산·학·연 구성과 신규위원 참여 등 배정의 분산 정도를 연도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신규 전문가 발굴과 후보군 보완에 환류하여 특정 위원에 대한 평가업무 편중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부지취득 등 선행 절차의 진척을 반영한 단계별 예산편성 필요

- 동 사업은 부지취득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보상비를 반복 편성하여, 2024~2026년 총 12억원이 편성되었음에도 2026년 6월 말까지 집행실적이 없고 2025년에는 6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부지취득 절차의 실제 진척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보상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부지취득 지연으로 설계와 착공이 연쇄적으로 지연되어 준공계획이 2027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변경될 예정이고 현재 타당성재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농촌진흥청은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부지취득 조건을 반영하여 총사업비·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재정비하고, 실제 사업진척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후속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은 과수 디지털 재배기술의 종합적·체계적인 현장실증을 위한 연구시설과 시험포장을 충청북도 충주시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회 계연도 예산현액 6억 3,000만원 중 2,1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900만원을 불용하였음.¹⁶⁾

16)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기반구축(1131-307)

【 2025회계연도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기반구축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기반구축	630	-	-	-	630	21	-	609	1,223

나) 검토의견

□ 「국가재정법」 제39조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¹⁷⁾

동법 제50조는 대규모사업의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미리 예산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은 그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¹⁸⁾

17)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18)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동 사업은 총사업비 387억 9,100만원의 건축사업으로서 상
기의 규정들이 적용됨.¹⁹⁾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선행단계에서 부지와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을 충분히 확정된 후 후속단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일정 지연에 따른 대규모 불용과 이월을
방지하려는 데 있음.

특히, 보상비는 그 성격상 대상 토지와 매수방식 및 가격, 소
유권 이전시점이 확정되어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러한 조건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의 2025년 집행률은 3.3%에 그쳤고, 불용액
6억 900만원의 98.5%에 해당하는 6억원이 건설보상비이므
로, 주요 불용사유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나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각 호 생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타당성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
한 사업"이란 불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1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
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
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준공잔액이 아니라, 부지취득이라는 핵심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데 있음.

【 2023~2026년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주요 집행내용
2023	783	636	81.2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부대비
2024	3,228	1,757	54.4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2025	630	21	3.3	시설부대비
2026.6.	1,223	352	28.8	실시설계비, 사업부지 측량수수료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 특히, 건설보상비의 미집행은 2025년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님.

건설보상비는 2024년 3억원, 2025년 6억원, 2026년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3개 연도에 걸쳐 12억원의 국비 보상비가 편성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없는 상태임.

【 건설보상비(국비) 연도별 편성·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024	300	-	0.0	전액 미집행
2025	600	-	0.0	전액 불용
2026(6월 말)	300	-	0.0	원인행위 없음
계	1,200	-	0.0	-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 이는 부지 취득이 농촌진흥청 단독으로 완결할 수 없기 때문임.

사업부지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유상 매각만 가능하였고, 이에 충주시가 전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농촌진흥청이 청사부지를 다시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는 무상임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²⁰⁾

그런데, 무상임차 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청사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착공의 필수조건이었으므로, 보상비 집행은 국방부의 매각조건 확정과 충주시의 선매입 완료라는 두 단계의 선행 거래가 모두 이루어져야 가능한 구조였음.

【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부지확보의 선행관계 】

단계	주 체	주요 행위	다음 단계의 전제
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방식·가격 확정	충주시의 매입계약 체결 가능
2	충주시	전체 사업부지 선매입 및 소유권 확보	농촌진흥청에 청사부지 매각 가능
3	농촌진흥청	청사부지 재매입 및 잔여부지 무상임차	건축허가·공사발주 가능
4	농촌진흥청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조정 후 공사 착수	공정에 따른 공사비 집행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의 부지확보 사전협의 과정에서 국방부가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충주시도 연내 매입절차 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2025년 중 보상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20) 농촌진흥청은 사업부지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의 적용대상이어서 기관 간 무상 관리전환이 불가능하고 유상 매각만 가능하며, 무상임대 부지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연구소 건물이 들어설 청사부지의 매입이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후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국유재산 매각방식이 수의계약 매각에서 손실보상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대외적 제도변화라는 입장임.

물론, 국유재산 매각방식의 변경과 공시지가 변동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요인이고, 관계기관이 연내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예산편성 당시의 일정에 일정한 근거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관계기관의 의견은 매각방식과 대상면적, 가격범위 및 소유권 이전일정이 확정된 매매계약과는 구분되므로,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두 단계의 거래가 먼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비 전액을 한 회계연도에 편성하려면, 각 단계의 완료 증빙과 지연 시 대체방안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였어야 함.

또한, 매각방식의 변경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부지취득이 여러 기관의 순차적 조치에 의존하고 가격변동 위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임.

따라서, 이러한 위험은 보상비를 전액 편성할 근거라기보다, 부지취득의 확정시점과 설계·인허가의 진행도를 연계하여 보상비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거나 예산요구액에 명확한 집행조건을 붙여야 할 사유에 가까움.

더욱이, 2024년에도 건설보상비 3억원이 편성되어 집행실적이 없었던 상태에서 2025년에는 그 2배인 6억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전년도 미집행의 원인이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부지취득의 지연은 설계 공사일정 전반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음. 기본설계는 8개월, 중간설계는 12개월, 토지보상은 18개월, 실시설계는 33개월 지연되었고 준공은 2027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36개월 늦춰질 예정임.

【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주요 일정 변경 】

구 분	당초 계획 (완료 기준)	현행 계획 (완료 기준)	지연기간	변동 사유
기본설계	2024.9.	2025.5.	8개월	기존 부지 암반에 따른 부지변경, 총사업비 협의·조정 및 국유지 사용 승인 소요
중간설계	2024.12.	2025.12.	12개월	기본설계 조달청 적정성 검토 및 설계반영(4개월), 중간설계(3개월)
타당성재조사	-	2027.3.	-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조사(2026.5.~)
토지보상	2025.12.	2027.6.	18개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부족 및 국유재산 매각방식 변경(수의계약 → 손실보상)
실시설계	2025.6.	2028.3.	33개월	실시설계 후 조달청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기간 포함
공사 입찰·계약	2026.3.	2028.6.	27개월	타당성재조사에 따른 사업 순연
착공	2026.4.	2028.7.	27개월	타당성재조사에 따른 사업 순연
준공	2027.12.	2030.12.	36개월	난공사 구간에 따른 공기 연장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 당초 계획은 2024년 9월 총사업비 협의·조정 당시의 일정이며, 지연기간은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 이처럼 부지확보와 실시설계가 지연되면 물가상승과 설계 변경, 감리기간 연장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그런데, 총사업비에 반영된 공식 사업기간은 아직 2027년까지이고, 농촌진흥청은 타당성재조사 이후 2030년까지로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실제 사업관리 일정과 총사업비 기준일정이 3년 가량 어긋난 상태가 지속되면 연차별 예산요구의 근거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재정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기간 조정협의를 신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도 동 사업의 집행상황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예산현액 12억 2,3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3억 5,200만원 (28.8%)에 불과하고, 건설보상비 3억원은 원인행위와 집행이 모두 전무한 실정임.

【 2026년 6월 말 기준 비목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비 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상황
건설보상비	300	-	-	0.0	부지매입 협의 중
기본조사설계비	249	114	-	0.0	용역 진행·지급 전
실시설계비	644	644	322	50.0	타당성재조사로 용역 중지
시설부대비	30	30	30	100.0	사업부지 측량수수료
합 계	1,223	788	352	28.8	-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2026년에 일부 인허가 및 설계절차가 진행되었으나, 3월 총사업비 협의·조정 신청이 반려되고, 5월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재조사가 개시되면서 실시설계가 중지되었음.

또한, 2026년 건설보상비 3억원도 6월 말까지 집행되지 않아 2024년부터 반복된 부지취득 지연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후속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기 보다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부지 매각방식·가격 및 소유권 이전조건 등을 우선 확정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재정법」 제39조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을 사업단계의 순서에 따라 편성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동 사업은 낙관적 전망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선반영하기보다 선행절차의 실제 진척과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연차별 소요를 산정하였어야 했음.

특히, 동 사업이 총사업비 조정과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이 되어 기존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더 이상 안정적인 예산 편성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속 연도의 예산요구는 재조사 결과와 부지취득 조건의 확정을 전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사업기간, 시설규모, 부지 매각방식과 가격, 소유권 이전시점, 실시설계 완료일을 하나의 기준계획으로 확정하고, 총사업비 관리상의 공식 일정과 내부 사업관리 일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둘째, 부지확보·설계완료·총사업비 협의·조달계약을 단계별 관문으로 설정하여 보상비는 매각대상·가격과 소유권 이전 일정이 확인된 후에, 공사비와 감리비는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된 후에 각각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타당성재조사 기간에는 재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필요한 비용과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후속 설계비·공사비를 구분하고, 전년도 불용액과 실제 공정률을 반영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부지 및 총사업비 위험관리대장에 매각방식 변경, 가격상승, 선행기관의 의사결정, 설계용역 중지, 인허가 및 조달 지연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각 위험의 책임기관과 해소기한 및 대체방안, 공사비 물가상승·설계변경·감리기간 연장 등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분기별로 갱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차년도 결산자료에는 기준계획 대비 단계별 일정 편차, 보상비 편성 전에 확인한 증빙, 총사업비와 준공예정일의 변경내역 및 2024~2025년 보상비 미집행에 대한 환류조치를 함께 제시하여 동일한 선 편성과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파속채소연구소 구축: 선행절차의 완료 여부를 반영한 공사비·감리비 편성 필요

- 동 사업은 착공에 필요한 군관리계획 변경, 설계완료, 토지보상 및 공사계약 등 선행절차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공사비와 감리비를 편성함에 따라 60억 8,400만원의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농촌진흥청은 향후 실제 사업진척도와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파속채소연구소 구축사업은 산업적 파급력이 큰 파속채소(마늘·양파 등)의 품종육성과 안정생산기술의 개발·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32억 1,600만원 중 71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60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음²¹⁾.

【 2025회계연도 파속채소연구소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파속채소연구소 구축사업	12,310	906	-	-	13,216	7,132	-	6,084	2,498

21)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파속채소연구소 구축사업(R&D)(1231-306)

나) 검토의견

□ 「국가재정법」 제39조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을 사업 단계의 순서에 따라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²²⁾ 같은 법 제 50조는 대규모사업의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미리 예산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변경 시에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²³⁾

동 사업은 총사업비 343억 2,200만원의 건축사업으로서 상 기 규정들의 적용대상임.²⁴⁾

이와 같은 단계별 예산편성 및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취지

22)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제2항 및 제3항 생략)

23)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2항 이하 생략)

2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를 고려하면, 시설사업의 공사비와 감리비는 단순히 준공 시점에 맞추어 배분하기보다 설계·인허가·보상 등 선행절차의 실제 진척도와 연도 내 착공 및 기성지급 가능성을 토대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2025년 비목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착공 이후 단계의 경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건설보상비와 이월 설계비는 전액 집행된 반면, 공사비 52억 5,200만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감리비도 9억 3,700만원 중 1억 700만원만 집행되어 두 비목이 전체 불용액의 99.9%를 차지하고 집행률은 1.7%에 그쳤음.

【 2025회계연도 파속채소연구소 구축 사업 비목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비 목	재 원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불용액 비중
건설보상비	본예산	6,110	6,110	-	100.0	-
기본조사설계비	전년도 이월	302	302	-	100.0	-
실시설계비	전년도 이월	604	604	-	100.0	-
공사비	본예산	5,252	-	5,252	0.0	86.3
감리비	본예산	937	107	830	11.4	13.6
시설부대비	본예산	11	9	2	81.8	0.0
합 계	-	13,216	7,132	6,084	54.0	100.0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전체 집행률 54%에는 2024년에서 이월된 설계비의 집행실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5년 본예산만을 기준으로 하면 집행률은 50.6% 수준으로, 당해연도 편성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되지 못하였고, 그 대부분이 착공을 전제로 편성된 공사비와 감리비였음.

□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2025년 예산요구 당시 2024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4월까지 토지보상과 공사계약을 마친 뒤 같은 해 5월 착공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사업 검토,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농수관로 이설 협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관계기관 협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을 일정지연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물론, 관계기관 협의의 종료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주요 지연사유는 모두 2024년 10월 이전부터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2025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 이미 당초 사업일정의 차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어 있었음.

【 사업기간 2년 연장의 사유별 내역 】

지연 사유	협약기간	지연기간	관계기관
국회반영 연구개발사업 검토	2023. 3.~2024. 3.	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수관로 이설 협의	2023. 12.~2024. 6.	7개월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2024. 6.~2024. 10.	4개월	농림축산식품부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최초 예산요구 당시의 일정에 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선행절차의 지연 정도와 설계·보상·조달에 필요한 잔여기간을 다시 검토하여 2025년 중 착공과 공사비 집행이 가능한지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었음.

- 실제 사업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지연되어 군관리계획 변경 24개월, 계획설계 18개월, 중간설계 28개월, 실시설계 27개월이 각각 지연되었고, 토지보상과 공사계약 및 착공도 각각 24~25개월 늦어져 준공시점은 2026년 12월에서 2028년 7월로 변경되었음.

【 파속채소연구소 구축사업 주요 일정 변경 】

구 분	당초 계획 (완료 기준)	현행 계획 (완료 기준)	지연기간
기본계획 수립	2022. 12.	2022. 12.	-
부지 선정	2022. 12.	2022. 12.	-
군관리계획 변경(인허가)	2024. 5.	2026. 5.	24개월
계획설계	2023. 12.	2025. 6.	18개월
중간설계	2024. 5.	2026. 9.	28개월
실시설계	2024. 12.	2027. 3.	27개월
토지보상	2025. 4.	2027. 5.	25개월
공사 입찰·계약	2025. 3.	2027. 3.	24개월
착공	2025. 5.	2027. 5.	24개월
준공	2026. 12.	2028. 7.	19개월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일정지연이 특정 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인허가·설계·보상·착공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공사비 전액 불용은 연중 발생한 일시적인 계약지연보다는 연차별 예산편성이 실제 사업추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총사업비는 최초 345억 400만원에서 2023년 12월 기본조사설계비 낙찰차액 반납으로 343억 2,2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2025년 7월에는 총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기간만 2026년에서 2028년까지로 2년 연장되었음.

【 파속채소연구소 구축사업 총사업비·사업기간 조정 경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정시기	총사업비	사업기간	조정 내용
최초	-	34,504	2023~2026	당초 계획
1차 변경	2023. 12.	34,322	2023~2026	설계비 낙찰차액 182 반납
2차 변경	2025. 7.	34,322	2023~2028	관계기관 협의 반영, 2년 연장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사업기간을 실제 일정에 맞게 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고, 현재까지 총사업비도 최초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간연장 자체만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된 만큼 물가변동, 설계변경, 감리기간 증가 등에 따른 추가소요가 기존 총사업비 범위에서 감당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일정변경 시 연차별 투자계획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6년 6월 말 기준 예산현액 24억 9,800만원 중 24억 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96.4%로 나타나고 있으나,

【 2026년 6월 말 기준 비목별 집행 현황 】

(기준 : 2026. 6. 말, 단위 : 백만원, %)

비 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내용
건설보상비	2,421	2,400	2,400	99.1	보상재원 전도
실시설계비	68	-	-	0.0	추가 측량·조사 예정
시설부대비	9	9	9	100.0	조달청 검토수수료
합 계	2,498	2,409	2,409	96.4	-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이 가운데 24억원은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재원을 한국부동산원에 전도한 금액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실제 보상금이 지급되어 소유권이 확보된 것과는 구분됨.

농촌진흥청은 군관리계획 변경과 감정평가 등 선행절차가 진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단순한 중앙관서 집행률만으로는 실제 토지보상 및 착공준비의 진척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보상업무 수행기관에 교부한 금액과 실제 보상금 지급액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상협의 및 소유권 취득 현황 등을 함께 점검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진척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동 사업은 예산확정 이전부터 주요 선행절차의 지연이 상당 부분 가시화되어 있었음에도 2025년 5월 착공을 전제로 공사비와 감리비를 편성하여 공사비는 전액, 감리비는 대부분 불용되었음.

이후 주요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18~28개월 지연된 점을 고려하면, 연차별 예산편성 단계에서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다음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사업 예산 편성·집행 시 인허가·설계·보상·공사계약 및 착공 등 핵심 선행절차의 실제 완료시점을 기준공정과 비교하고, 공사비와 감리비는 연도 내 착공 및 기성지급이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예산요구 이후 선행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사 과정에서 후속 공사비의 집행가능성을 다시 검증하여 연차별 소요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보상업무 수행기관에 교부한 금액과 실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는 등 중앙관서의 회계상 집

행률뿐 아니라 실제 사업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넷째,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감리기간
증가 등 비용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일정
변경 시에는 사업기간뿐 아니라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
획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의 예산 환류 강화 필요

- 동 출연금은 9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5년 정부 성과계획의 대표지표는 신품종 종자보급량뿐이어서 예산현액의 45.1%를 차지하는 종자·종묘 생산·보급 사업의 성과만 직접 측정하는 구조임. 또한, 9개 내부지표는 2023~2025년 3년간 목표 미달 사례가 없고 일부는 목표치와 실적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출연금 전체 성과를 적절히 측정하고 사업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표 구성과 목표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 사업은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365억 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²⁵⁾

진흥원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술실용화 촉진, 농업공공기술 진흥,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운영, 종자·종묘 생산·보급, 분석검정 서비스, 전기식 농기계 배터리 안전검정시설 구축 및 지속가능경영 등 9개 내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음.²⁶⁾

25)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1136-300)

【 2025회계연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B-A)	36,504	-	-	-	36,504	36,504	-	-	35,710
[총수입(A)]	25,145	-	-	-	25,145	25,145	-	-	24,484
○ 사업수입	22,169	-	-	-	22,169	22,169	-	-	22,169
○ 사업외수입	544	-	-	-	544	544	-	-	586
○ 이월결산잉여금	2,432	-	-	-	2,432	2,432	-	-	1,729
[총지출(B)]	61,649	-	-	-	61,649	61,649	-	-	60,194
○ 사업비	37,160	-	-	-	37,160	37,160	-	-	35,001
- 기술실용화촉진	3,513	-	-	-	3,513	3,513	-	-	3,494
- 농업공공기술진흥	2,138	-	-	-	2,138	2,138	-	-	2,138
- 농식품기술이전공정고도화	1,500	-	-	-	1,500	1,500	-	-	1,500
-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2,160	-	-	-	2,160	2,160	-	-	1,944
- 치유농업사자격시험 운영	480	-	-	-	480	480	-	-	1,140
-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	15,807	-	-	-	15,807	15,807	-	-	18,204
- 분석검정 서비스	4,851	-	-	-	4,851	4,851	-	-	5,051
- 지속가능경영	1,330	-	-	-	1,330	1,330	-	-	1,330
- 사료작물종자생산단지구축	-	-	-	-	-	-	-	-	200
- 전기식배터리검정시설구축	5,381	-	-	-	5,381	5,381	-	-	-
○ 인건비	21,538	-	-	-	21,538	21,538	-	-	22,425
○ 경상비	2,438	-	-	-	2,438	2,438	-	-	2,236
○ 예비비	513	-	-	-	513	513	-	-	532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나) 검토의견

□ 「국가재정법」 제85조의2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성과
목표·성과지표의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및 사업의 계획 수립·집행과정·결과에 대한 점검·분
석·평가로 규정하고 있고²⁷⁾,

26) 「농촌진흥법」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이하 생략)

27)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같은 법 제85조의6은 성과목표가 성과지표를 통하여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⁸⁾.

□ 동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9개 내역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임. 출연금은 교부 시점에 농촌진흥청 결산상 집행액으로 계상되므로, 집행률 100%는 출연금이 전액 교부되었음을 의미할 뿐, 진흥원 단계의 실제 지출 실적과 사업성과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님.

다만, 2025년 진흥원 단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3%인 1억 300만원에 그치고, 모든 내역사업의 집행률도 높은 수준이므로,

이번 결산에서는 단순한 집행부진 여부보다 높은 집행실적이 성과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결과성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28)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2025회계연도 진흥원 내역사업별 실적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출연금(A)	자체 재원 (B)	전년도 이월(C)	예산현액 (A+B+C)	실집행액	불용액	예산비중
① 기술실용화 촉진	3,591	-	-	3,591	3,512	79	9.5
② 농업공공기술 진흥	2,138	-	-	2,138	2,138	-	5.7
③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1,500	-	-	1,500	1,500	-	4.0
④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1,678	-	45	1,723	1,722	1	4.6
⑤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운영	460	-	-	460	460	-	1.2
⑥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	16,920	107	-	17,027	17,021	6	45.1
⑦ 분석검정 서비스	4,176	-	-	4,176	4,167	9	11.1
⑧ 배터리 안전검정시설 구축	4,580	-	1,076	5,656	5,656	-	15.0
⑨ 지속가능경영	1,461	-	-	1,461	1,453	8	3.9
합 계	36,504	107	1,121	37,732	37,629	103	100.0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 2025년 정부 성과계획에서 동 사업의 대표성과는 신품종 종자보급량을 중심으로 측정되었음.

종자·종묘 생산·보급은 예산현액 170억 2,700만원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하고, 2025년 목표 3,100톤에 대하여 3,271톤을 보급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의 계획이행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는 의미가 있음.

□ 그러나, 하나의 내역사업이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표가 나머지 8개 사업의 성과까지 대표하는 것은 아님.

기술이전과 공정고도화의 목적은 지원기업의 제품화·매출·고용에, 해외 테스트베드는 수출과 해외거래의 지속에, 분석검정은 처리기간·정확도·안전결합의 발견에 각각 있으므로 종자보급량으로 이러한 성과를 판단할 수는 없음.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기술사업화 제품매출액 지표를 추가하여 요구하였으나, 그 적용대상인 2개 내역사업의 예산현액은 36억 3,800만원으로 전체의 9.6%에 그쳐, 두 지표를 합하여도 포괄되는 예산은 54.8%에 머무름.

【 대표성과지표의 내역사업·예산 포괄범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직접 적용 내역사업	예산현액	전체 대비	지표명
2025년 기존지표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	17,027	45.1	신품종 종자보급량
2027년 추가계획	농업공공기술 진흥,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3,638	9.6	기술사업화 제품매출액
두 지표 적용대상	3개 내역사업	20,665	54.8	-
직접 미적용	나머지 6개 내역사업	17,067	45.2	별도 결과지표 필요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 대표지표가 모든 예산을 금액비중에 따라 포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대상 밖의 사업에 대해서도 결산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결과지표를 제시하여야 출연금의 효과와 차년도 배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음.

특히, 배터리 안전검정시설 구축은 56억 5,600만원으로 전체의 15.0%, 분석검정 서비스는 41억 7,600만원으로 11.1%를 차지하므로 단순한 구축완료와 분석건수만으로는 재정투입의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움.

- 한편, 진흥원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목표에 미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음.

오히려, 사업화지원 제품매출액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목표치와 실적이 완전히 일치하고, 치유농업 전문인력 선발도 2023년과 2024년에 목표와 실적이 같으며, 산업재산권 실용화율은 2025년에 목표와 실적이 모두 46.8%로 동일함.

해외진출 지원기업 수출증가율의 목표 초과폭도 3년간 0.088~0.238%p에 그치고, 품질분석성과 역시 목표 3.790점에 실적 3.794점으로 사실상 목표치에 수렴하고 있음.

【 2023~2025년 내역사업별 성과지표의 목표 및 실적 】

성과지표	2023 목표	2023 실적	2024 목표	2024 실적	2025 목표	2025 실적
산업재산권 실용화율(%)	43.8	46.4	46.5	46.6	46.8	46.8
사업화지원 제품매출액(억원)	436	436	444	444	-	-
기술사업화 제품매출 성과(%)	-	-	-	-	182.395	189.192
해외진출 지원기업 수출증가율(%)	7.776	8.014	11.643	11.800	14.160	14.248
치유농업 전문인력 선발(명, 누적)	391	391	521	521	651	781
종자·종묘 보급목표 달성률(%)	100	106.491	100	103.507	100	104.668
품질분석 지원율(점)	6.446	6.507	7.808	7.820	-	-
품질분석성과(점)	-	-	-	-	3.790	3.794
배터리 검정시설 구축	설계	설계완료	시설구축	구축완료	장비구축	구축완료
경영실적평가 등급	A등급	A등급	A등급	A등급	A등급	A등급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 물론,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며, 종자·종묘 보급목표 달성률과 같이 계획 대비 이행률을 측정하는 지표는 그 구조상 목표가 100%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목표의 설정근거가 과거 실적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고, 3년간 미달 사례가 전혀 없다면, 성과목표가 사업개선과 성과향상을 유도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2항이 성과목표를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

추어 볼 때, 농촌진흥청 및 진흥원은 목표치의 도전성과
산정근거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의 내부지표는 상당수가 산출 또는 과정 단계
에 머물러 있어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

【 내역사업별 내부 성과지표의 성과단계와 보완사항 】

내역사업	내부 성과지표	성과단계	보완이 필요한 결과지표
기술실용화 촉진	산업재산권 실용화율	중간성과	계약 이후 제품화·매출·기술료 수납
농업공공기술 진흥, 기술 이전업체 공정고도화	기술사업화 제품매출 성과	결과지향	지원 전 기준값, 자연증가분, 지원 코호트 구분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기업 수출증가율	결과지향	수출 지속기간, 신규 거래처 확보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운영	최종합격자 누계	산출	자격활용, 취업, 활동 지속 여부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	보급목표 달성률	산출	재배면적, 농가소득, 수입대체 효과
분석검정 서비스	품질분석성과	산출·효율	처리기간, 부적합 발견, 재시험 감소
배터리 안전검정시설 구축	시설·장비 구축완료	과정	가동률, 검정건수, 건당비용, 안전개선
지속가능경영	경영실적평가 등급	기관종합	내역사업별 예산효과와 직접 연결 곤란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 다만, 개별 지표를 살펴보면 성과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며, 특히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의 경우 지
원기업의 수출증가율을 중소기업 전체의 수출증가율과 함
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점.

지원기업의 수출증가율이 2023년 8.0%, 2024년 11.8%, 2025년 14.2%인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전체는 △4.2%, 1.2%, 6.8%로 나타나 지원의 추가효과를 비교집단과 대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은 다른 내역사업의 성과측정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반면, 기술사업화 제품매출 성과는 최근 3년간 지원기업에서 평가연도에 발생한 사업화 제품매출액을 같은 기간의 지원사업비로 나누는 산식이므로, 분자에 계상되는 매출이 해당 지원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식별될 필요가 있음.

지원 전부터 발생하던 매출과 시장의 자연증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출연금 지원의 추가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고, 소수 기업의 대규모 매출이 전체 평균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산업재산권 실용화의 경우에도 분자인 기술실시건수가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계약 이후 실제 실시·제품화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지표가 특허의 활용 수준이 아니라 계약 체결 수준을 나타내는 데 그칠 수 있음.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최종합격자가 누적 781명으로 목표 651명을 초과하였으나, 자격취득자가 실제로 치유농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는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배터리 안전검정시설은 2025년 11월 완공되어 2026년 1월부터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026년 성과목표가 여전히 ‘운영 안착’이라는 정성적 목표로 제시되어 있어 가동률·검정건수 등 활용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필요함.

또한,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지표로 제시된 경영실적평가 등급은 진흥원의 조직·인사·재무관리와 전체 사업실적을 종합한 기관 단위 지표이므로, 평가등급의 변화가 해당 내역 사업의 성과에 따른 것인지 다른 사업이나 기관 일반관리의 결과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따라서, 경영실적평가 등급은 기관 전체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보조지표로 활용하되, 지속가능경영 내역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그에 따른 산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동 출연금은 진흥원 단계의 실행행률이 99.7%에 이르는 등 집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표지표가 예산의 절반가량만 포섭하고, 내부지표도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는 산출·과정 중심의 지표에 머물러 있어 재정투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결산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9개 내역사업별로 사업목적－주요활동－직접산출－최종결과의 논리모형을 작성하고, 정부 성과계획에는 사업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지표를 두되, 나머지 사업은 결산에 제시하는 보조 결과지표로 관리하여 대표성과 세부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성과목표를 전년도 실적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만 설정하지 아니하고 최근 실적 추세와 정책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목표치의 도전성과 설정근거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되,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지표는 그 원인이 성과향상에 따른 것인지 목표설정의 보수성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7년 추가 예정인 기술사업화 제품매출액은 지원 기업별 지원 전·후 매출, 비교집단 또는 지원 전 추세, 생존·고용 및 실제 기술적용 여부를 함께 관리하고, 중앙값과 기업규모·지원유형별 분포를 제시하여 소수 기업의 실적이 전체 성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종자·종묘는 보급량과 함께 실제 재배면적·농가소득을, 분석검정은 처리기간·부적합 발견을, 자격시험은 자격 활용과 활동 지속 여부를, 배터리 안전검정시설은 가동률·검정건수를 각각 결과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2026년 하반기 중 내역사업별 시범지표와 산정방식을 마련하여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2027년부터 목표·실적 및 단위성과를 결산자료에 제시하여 그 결과가 이후 연도 출연금의 증액·감액 및 내역 조정에 환류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경상이전수입 10억 8,400만원, 재산수입 3,400만원 등 11억 1,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2억 3,5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 징수결정액 중 경상이전수입 1억 9,400만원, 재산수입 1,000만원 등 총 2억 4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3,1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산의 특징은 예산액에 비하여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의 수납이 감소하였다는 점임.
- 재산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등 감소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2,400만원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등 감소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8억 9,000만원 감소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34	14	10	-	4	△24
기타재산이자수입	34	14	10	-	4	△24
경상이전수입	1,084	221	194	-	27	△890
기타경상이전수입	1,084	221	194	-	27	△890
합 계	1,118	235	204	-	31	△914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8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이와 동일함.

□ 예산현액 중 지역농업특성화 30억 700만원, 전문인력양성 19억 4,000만원, 기관운영및사업지원 12억 2,100만원 등 총 67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음.

□ 기관운영및사업지원 6,8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 1,300만원 등 총 8,100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함.

【 2025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600	-	-	-	-	600	600	-	-
지역농업특성화	3,020	-	-	-	-	3,020	3,007	-	13
전문인력양성	1,940	-	-	-	-	1,940	1,940	-	-
기관운영 및 사업 지원	1,289	-	-	-	-	1,289	1,221	-	68
합 계	6,849	-	-	-	-	6,849	6,768	-	81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을 미편성하였으나, 43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의 특징은 관유물매각대가 증가하였다는 점이고, 종전부동산 매각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43억 2,500만원 증가하였음.

【 2025회계연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관유물매각대	-	4,325	4,325	-	-	4,325
토지매각대	-	4,325	4,325	-	-	4,325
합 계	-	4,325	4,325	-	-	4,325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2) 세출결산 : 없 음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상이전수입 15억 400만원, 재산수입 1,200만원 등 15억 1,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으로 24억 3,8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 징수결정액 중 경상이전수입 19억 1,600만원, 재산수입 6,400만원 등 총 19억 8,0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4억 5,8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의 특징은 재산수입 및 경상이전수입이 예산액 대비 증가하였다는 점임.
- 재산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등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5,200만원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 잔액반납 등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4억 1,200만원 증가하였음.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12	75	64	-	11	52
기타재산이자수입	12	75	64	-	11	52
경상이전수입	1,504	2,363	1,916	-	447	412
기타경상이전수입	1,504	2,363	1,916	-	447	412
합 계	1,516	2,438	1,980	-	458	464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38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이와 동일함.

□ 예산현액 중 지역농업특성화 662억 4,400만원, 농업신기술보급 388억 6,200만원, 농업기초기반및실용화기술개발 82억 4,800만원 등 총 1,133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지역농업특성화 4억 1,300만원, 농업신기술보급 4,500만원 등 총 4억 5,800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함.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8,248	-	-	-	-	8,248	8,248	-	-
농업신기술보급	38,907	-	-	-	-	38,907	38,862	-	45
지역농업특성화	66,657	-	-	-	-	66,657	66,244	-	413
합 계	113,812	-	-	-	-	113,812	113,354	-	458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